

아청법, 대중문화에서 창작자와 수용자를 괴롭혀 무엇을 남기려는가

-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휘(iam@seochanhwe.com)

법이 역효과를 낼 때

대체로 법 조항 첫 머리는 법 제정 취지나 목적을 적게 돼 있지만 어떤 법들은 그러한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역효과를 내곤 한다.

대체로 법 제정 이유가 취지와는 전혀 다른 데 있거나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애먼 피해자를 '제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1990년대 말엽 출판만화시장을 거의 궤멸 상태로 몰고 갔던 정보법(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지금 우리가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이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이러한 역효과의 표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보법이 지금까지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단행본 심의를 통해 만화를 맥락 고려 없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데에 적극 이용되고 있음을 보자면, 현재 만화를 비롯한 대중문화들은 그야말로 '엷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아청법은 이미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법인 정보법으로 대중매체의 '유해성'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을 다시 한 번 표현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음란성 관련해서는 정통법(정보통신법)의 음란물배포죄 항목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규제가 페스트리 빵만큼이나 겹겹이다. 한데 정보법의 전신인 미보법(미성년자보호법)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뒤를 이은 정보법은 여전히 모호성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아청법은 여기에 더해 한층 더 모호한 규정으로 규제 대상을 되레 확대하고 있다.

대중문화 창작자를 실험실 상자 속 벼룩으로 만드는 아청법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수위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제2조 제5호의 짝막한 문구로 말미암아 아청법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과 같은 대중문화매체의 표현 내용까지를 대상으로 삼게 됐다. 표현을 문제 삼고, 그 표현을 그려낸 사람은 거의 강간범죄자와 같은 수위라 할 수 있는 최저 5년 징역에 처한다.

이 법대로라면 만화가, 애니메이터, 게임 제작사, 단속권자의 눈에 보기에 다소 어려 보이는 인물이 '섹스/유사섹스/노출로 말미암은 수치심 유발/자위행위'(제2조 제4호)와 더불어 뭐가 해당할지 단속권자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그 밖의 성적행위'(제2조 제5호)를 그렸다는 이유로 강간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된다. 기소 당한 시점에서 강간범죄자나 다름없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즉 '아동·청소년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찍은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한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여기서 기준은 어디까지나 단속권자의 눈이다. 하지만 어떤 콘텐츠가 어떤 대목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법이 정보법과 마찬가지로 창작자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 대목이다. '섹스/유사섹스/노출로 말

미암은 수치심 유발/자위행위' 말고도 '그 밖의 성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은 단속권자의 그날 정신상태와 기분, 평소 성적 취향, 상상력에 따라 매우 무궁무진할 수 있다. 고작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강간범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창작자에게는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며, 자연히 안 걸리려면 표현 수위를 알아서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중문화 업계에 종사하는 모두를 순식간에 실험실 상자 속 벼룩 꼴로 만드는 일이며, 이는 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언급하는 창조경제의 첨병인 문화콘텐츠 업계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제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문화 수용자까지도 범죄자로 제조하는 아청법

이처럼 제멋대로인 아청법이 공격대상으로 삼는 건 비단 창작자들만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조한 자들과 더불어 아청법은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들까지도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제11조) 게다가 창작자는 창작한 시점에 소지한 것도 되므로 더 난감해진다.

실재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실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찍은 영상이 아님에도 이러한 법 조항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 범죄를 부추기거나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단 것으로, 정작 대중문화매체의 표현이 성범죄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하여는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고¹⁾ 이를 근거로 하여 대중문화 규제법의 발의가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성적 표현(과 더불어 성적 표현이라 보기도 민망하나 단속권자 보기에 성적 표현으로 여기는 것)은 근거 없는 '심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표현이 성범죄(나아가 폭력까지)를 조장하는가?는 대중문화의 표현을 앞뒤 맥락을 빼고 장면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문화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아청법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지정한 4대악 가운데 하나인 성범죄 타파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쓰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실제 성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노력 대신 고작 인터넷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던 불법복제자들을 성범죄자로 변환해 처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아청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 가운데 상당수는 창작자들보다도 이 콘텐츠 불법복제자들이다. 불법복제 자체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그 가운데 또 상당수가 성애 장면이 담긴 에로물로 우리나라에 정식 유통이 불가능한 것들임을 부인할 이유도 없다. 물론 과연 '음란'이란 표현으로 성인이라면 당연히 즐길 수 있어야 할 '에로'까지 뭉뚱그려 성인조차 즐길 수 없게 하는 데 고자정진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 옳기만 한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일이며 참으로 우스운 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이 과연 이처럼 손쉽게 잡아들인 이들을 승진점수가 높은 강력범으로 처벌하려 드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

1) The COPENHAGEN POST : Report - cartoon paedophilia harmless
<http://cphpost.dk/news/national/report-cartoon-paedophilia-harmless>

을 수 없다.

과연 아동·청소년을 납치해 찍은 음란물과 아무런 피해자가 없을뿐더러 연령 측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의 화상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며, 그 적용 이유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를 들이대는 게 온당한가? 나는 똑똑해서 안 그렇지만 누군가는 바보라서 0.0001%의 영향성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과연 현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어울리는 모습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호하고, 적용해야 할 법을 제대로 적용하라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납치하거나 동원해 찍은 영상을 제조하는 건 당연히 큰 범죄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반대가 없다. 하지만 그 법이 엉뚱한 콘텐츠를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고 고작 음란물을 불법 배포하는 수준으로 걸려든 사람들을 강간범 취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잡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태반이 아동·청소년이며 그 단속자 수가 법 개정 직후 수백 배 급상승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이미 대중문화 창작 업계가 ‘알아서 기는’ 통에 일이 사라지거나 완성된 창작물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다. 이 법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고치지 않는 한 피해자를 양산할 무서운 법이다.

아청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어디선가 납치당하거나 동원되어 발가벗은 채 카메라 앞에 서고 있을 아이들이며, 잡아야 할 대상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히려 들고 있는 성범죄자들이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호하고, 적용해야 할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지금 아청법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작 아이들의 성적 결정권을 비롯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대중문화 탄압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낳기 전에 이 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다.